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50
----------	------

발의연월일 : 2025. 1. 23.

발의자 : 최수진 · 신성범 · 한지아
유용원 · 박정하 · 구자근
김소희 · 김예지 · 성일종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850만원”을 “935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950만원”을 “1천93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